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경 기 도
(복지정책과)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처우개선 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1 |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 지급절차 개선

- 도 및 시군에서 시설 종사자에게 직접지급
 - (기존) 도 → 시군 → 시설장 → 종사자
 - (변경) 도 → 시군 → 종사자

2 | 미등록(신고)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확대

- 동일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등록 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푸드뱅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1개 기관 종사자
 - ※ ① 관계법령 또는 도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②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③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의 성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시군)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 관련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이 해당하지 않음
 - ⇒ 따라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적립금,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제외)
- 그러나, 처우개선 관련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
 - ⇒ 관련법상 비과세 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근로소득 해당
 - ⇒ 국세청 및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한 근로·보수총액에 포함

목 차

◆ 제1장 처우개선비 ◆

I. 총 칙	1
--------------	---

II.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사업개요	2
2. 지원대상	2
3. 지원제외 대상	5

III.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1. 지급기준	6
2. 지급방법	7

IV. 행정사항

1. 도 및 시군 담당부서	9
2.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10

◆ 제2장 특수근무수당 ◆

I. 총 칙	11
--------------	----

II.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사업개요	12
2. 지원대상 시설 및 지급액	13

III. 시설(사업)별 특수근무수당 세부내용

1. 노숙인시설	14
2. 지역자활센터	14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4
4. 노인복지시설	15
5. 장애인복지시설	15
6.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16
7. 여성가족복지시설	17
8. 아동복지시설	17
9. 다문화가족복지시설	19
10. 한센주거복지시설	19

◆ 제3장 보수교육비 ◆

I. 사업개요	21
II. 사업내용	
1. 교육비 지원 대상자	23
2. 교육비 지원 제외자	28
3. 교육 면제자	28
4. 과태료 부과	30
5. 교육 실시기관	31
6. 교육신청	31
7. 기타사항	31
III. 운영절차	32

◆ 제4장 상해보험비 ◆

I. 사업개요	43
II. 사업내용	
1. 가입대상	45
2. 제외대상	45
3. 신청기간 및 보장기간	45
4. 신청방법	46
5. 보장사항	46
6. 신규가입 및 기존가입 갱신방법	47
7.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48
III. 운영절차	49

제1장 처우개선비

I 총 칙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2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12.5.11.제정)

3 추진경위

- 「’16년 사회복지 처우개선 예산반영 계획」 무한돌봄복지과-30187(’15.11.11)호
-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복지정책과-12451(’16.10.27)호
-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복지정책과-30661(’17.10.20)호

4 기본원칙

(기존임금 감액불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총액 대비 감액 불가
- 경기도 특수근무수당 및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지급하던 수당 유지

(열거주의 원칙)

- 지급대상은 본 지침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¹⁾에 한정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로는 미등록된 기관

II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시설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 2,097개소 약 16,000명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269개소 약 1,400명
- 소요예산 : 10,498백만원(도비 100%)
- 지급액 : 1인 월 50천원(연간 600천원)
 - ※ 정규직·비정규직, 직급(관장, 부장 포함)과 관계없이 동일금액 지급
 - ※ 처우개선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절차 : 경기도 → 시군 → 종사자(개인계좌)
- 지급일 : 매월 25일
- 입금자명 : 경기도

2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시설
 - ※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함
 -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기관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 참고1 >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1.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별	세 부 종 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지역주민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일자리 (자활)		○ 지역자활센터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복지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장애인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정신질환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재활시설 중 종합시설			
여 성 가 족	성매매피해지원	○ 일반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지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	○ 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결핵·한센	○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2.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도 담당부서	시 설 명	관련법 등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관한조례」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사회적일자리과	○실버인력뱅크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노인복지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조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 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여성권익 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운영 지역지원기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아동복지법」, 「2017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결연기관	「아동복지법」
	○입양기관	「입양특례법」

- ※ 지원기준 : ① 관계법령 또는 도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②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③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종사자

③ 지원제외 대상

- 노인의료복지·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가제로 운영되는 시설
 -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 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내에 병설기관 등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는 지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노인복지주택, 노인교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 급식시설 및 진료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소속기관의 권익옹호와 발전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협회·단체
 - 시군에 설치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 기관²⁾
 - 시군 소속 종사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 담당 공무원이 처우개선비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입소자가 없는 경우,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

2)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기관 예) 광역푸드뱅크 등

Ⅲ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① 지급기준

※ 처우개선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대상자)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을 하는 날에 재직중인 자

- 신청일 : 매월 20일

※ 신청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신청일 전 평일에 신청

예) 20일이 일요일인 경우, 18일 금요일 기준으로 신청

- 종사자 입·퇴사 발생즉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입·퇴사자) 입·퇴사 보고 일자 기준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입·퇴사 상태에 따라 지급

예) 퇴사일자 20일 : 20일 기준 재직(근무)중이 아니므로 지급 신청 대상 아님

입사일자 20일 : 20일 기준 재직(근무)중으로 지급 신청 대상임

○ (휴가자·휴직자) 휴가·휴직 일자 기준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직(근무) 상태에 따라 지급

-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한 결근 및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지급

※ 결근 및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예) 휴직일자 20일 : 20일 기준 재직(근무)중이 아니므로 지급 신청 대상 아님

예) 개인신상 등 사유로 1.10일~5.10일 무급휴가자는 1~4월 미지급, 5월 지급

○ (신규등록 복지시설) 익년도 부터 지급

○ (지급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 정지

- 1. 면직된 때
-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직위해제 기간)
- 3. 정직 처분을 받은 때 (정직 기간)
- 4. 감봉 처분을 받은 때 (감봉 기간)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지급 정지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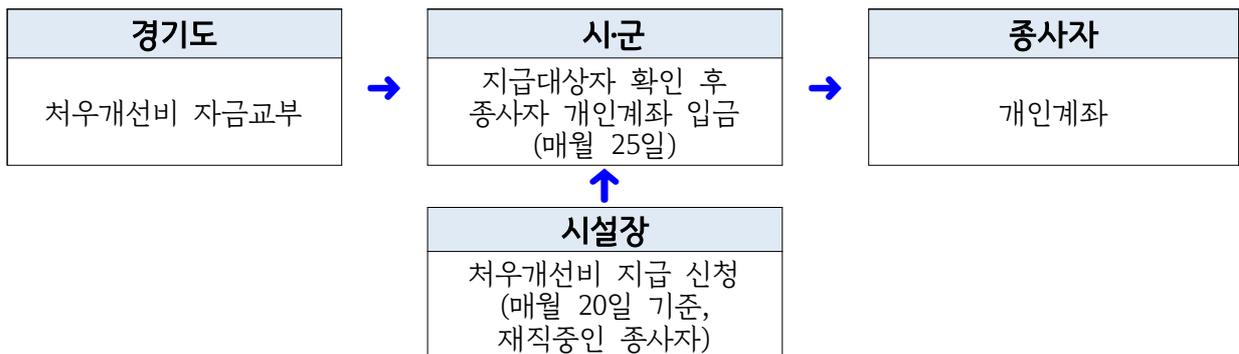
※ 주된 소속기관에서 처우개선비 신청

2 지급방법

○ 지급주체 : 경기도

○ 지급원칙 : 도 및 시·군에서 종사자 개인계좌에 직접입금

○ 지급절차 : 경기도 → 시·군 → 종사자 (개인계좌)



※ 도 직접시설(광역)의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종사자 개인계좌로 지급

[지급절차 세부사항]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순번	구분	항목	시스템	처 리 내 용
1	시설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정보 시스템	▶ 입퇴사 발생 시 보고 (발생즉시) * 종사자 보고 후 시군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처우개선비 신청 가능
2	시군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e음	▶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시설	처우개선비 신청	시설정보 시스템	▶ 처우개선비 신청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4	시군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e음	▶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5	시군	급여자료생성	행복e음	▶ 처우개선비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
6	시군	지출품의 및 지급	e-호조	▶ 행복e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 시설에서 서면(수기) 별도 보고한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2.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입·퇴사, 휴직 등) 발생 시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

○ 입금자명 : 경기도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 혈족) 가능

※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사유 및 종사자-대리수령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도 및 시·군 담당부서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안내
 - 사회복지시설에 수당 신청 절차, 지침 변경사항 안내 등
- 처우개선비 예산은 별도 세부사업(부기명)으로 편성
 - 시군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 시설 운영비 등 예산과 동일 세부사업(부기명)으로 편성 불가
-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행복e음 사용 사전준비 등
 -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배정, 종사자 입·퇴사 승인 수당지급 전 처리완료
 -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신청자 명단을 시설(기관)에서 송부 받아 취합정리
- 처우개선비 지급 (매월 25일)
 - 대상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일에 차질 없이 입금되도록 유의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임면 및 변동사항 보고를 확인 후 지급
 - 계좌오류 등으로 지출 불가 시 익월에 지급 가능
-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지도·점검
 - 대상자 중복·누락 및 과오지급이 없도록 지급대상자 관리 요망
 -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기관) 지도·감독 철저
 - ※ 처우개선비의 적정 청구, 도 및 시·군에서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임금의 감소 여부 등
 - 처우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종사자의 급여총액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 검토

②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
-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 신청일(20일) 기준 입면보고가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처우개선비 신청 가능
 - 종사자 입·퇴사 발생즉시 관련부서 온라인(서면) 보고조치 완료
 - ※ 허위 입면보고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한 시설은 해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 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종사자) 입면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입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p.79)

적용대상	제출서 유형		보고대상문서	보고주기
사회복지시설 공동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발생즉시

-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매월 20일)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신청자 명단 작성하여 도·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시설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기본급, 각종 수당이 전년도 급여총액 대비 적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기존에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
 - ※ 해당사항 적발 시 적발사항 발생 월부터 처우개선비 환수
 - ※ 지원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지원 중단 및 행정처분 할 수 있음

제2장 특수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행정사항은 처우개선비 지원(p.6~10) 지침에 준하며, 시설(사업)별 운영사항에 따라 다른 점은 각 담당부서의 운영지침에 따름

I 총 칙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종사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

2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지침

3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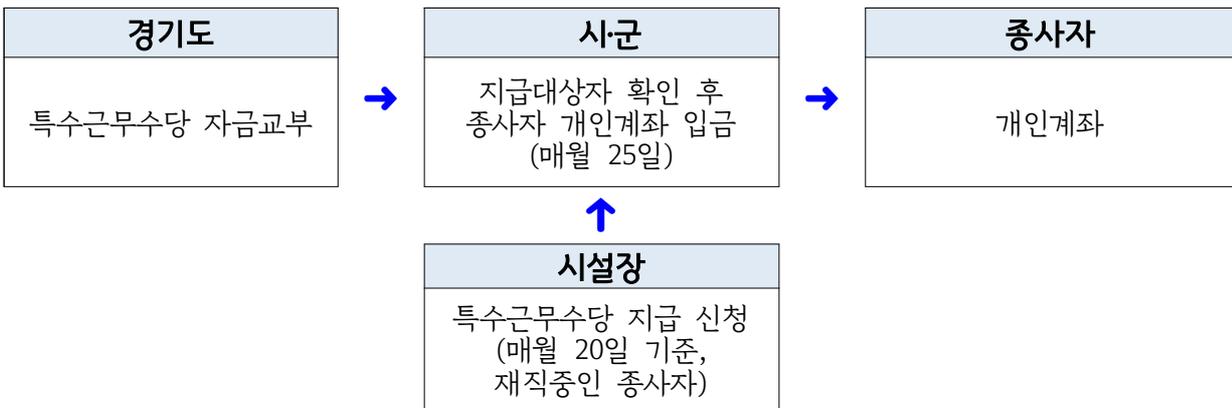
(기존임금 감액불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 총액 대비 감액 불가
-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지급하던 수당 유지
(열거주의 원칙)
- 지급대상은 본 지침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

II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시설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 2,388개소 14,799명
- 소요예산 : 30,768백만원(도비 4,446, 시군비 26,322)
* 도비지원 0~100% 시설별 상이
- 지급액 : 1인 월 50천원 ~ 290천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절차 : 경기도 → 시군 → 종사자(개인계좌)



- 지급일 : 매월 25일

[특수근무수당 지급의 근무년수(경력)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경력인정(군 복무경력 포함) 적용
- 단, 개별 사업(시설) 지침에 경력인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지침 우선 적용

② 지원대상 시설 및 지급액

도 담당부서	시설종류	지급액(천원)	
		5년미만	5년이상
복지정책과	노숙인자활시설	100	150
	노숙인재활요양시설	240	290
	노숙인일시보호소	100	15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0	150
사회적일자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지역자활센터	100	150
	노인일자리전담기관	100	150
노인복지과/ 사회복지담당관	노인주거복지시설	150	200
	노인의료복지시설	150	200
	노인복지관	100	150
	노인보호전문기관	100	150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200	25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0	25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0	25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0	1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150
건강증진과/ 보건위생담당관	정신요양시설	150	200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150	200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100	150
	정신재활시설 중 종합시설(이용,생활)	100/150	150/200
여성권익가족과 / 가족복지담당관	일반지원시설	200	250
	외국인여성지원시설	200	250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00	25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	25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	250
	모자가족복지시설	150	2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50	200
	일시지원복지시설	150	200
	자활지원센터	50	50
	성매매피해상담소	50	50
	성폭력피해상담소	50	50
	가정폭력상담소	50	50
	긴급전화센터	200	25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	100
아동청소년과/ 가족복지담당관	양육시설	150	200
	일시보호시설	150	200
	보호치료시설	150	200
	자립지원시설	150	150
	공동생활가정	150	200
	지역아동센터	100	150
	가정위탁지원센터	100	150
	아동보호전문기관	100	150
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150	200
보건위생담당관	한센주거복지시설	150	200

III 시설(사업)별 특수근무수당 세부내용

1 노숙인시설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근무 종사자
- 지급액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자활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소	10만원 / 월	15만원 / 월
재활시설, 요양시설	24만원 / 월	29만원 / 월

2 지역자활센터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근무 종사자
- 지급액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0만원 / 월	15만원 / 월

- 지역자활센터 정직원에게 한함.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원대상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근무 종사자
- 지급액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10만원 / 월	15만원 / 월

4 노인복지시설

<노인 생활시설>

○ 지원대상 : 양로(국비지원)·요양('08년 이전 지원) 법인 시설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노인양로·요양시설	15만원 / 월	20만원 / 월

-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최근 6개월 평균)

수급자 비율	30% 미만	30%이상~50%미만	50%이상
지원기준	미지원	80%	100%

<노인 이용시설>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도 노인종합상담센터	10만원 / 월	15만원 / 월

- 노인복지관 정직원에게 한함.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 지원대상 : 유형별 거주시설(중증영유아 포함),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거주시설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20만원 / 월	25만원 / 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장애인복지관 등	10만원 / 월	15만원 / 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지원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촉탁의사 지급 제외)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10만원 / 월	15만원 / 월

⑥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 지원대상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근무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생활시설	15만원 / 월	20만원 / 월
이용시설	10만원 / 월	15만원 / 월

※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7 여성가족복지시설

- 지원대상 : 성폭력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일반지원, 외국인여성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	20만원 / 월	25만원 / 월
모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15만원 / 월	20만원 / 월
자활지원센터,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5만원 / 월	5만원 / 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만원 / 월	10만원 / 월

8 아동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등 근무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15만원 / 월	20만원 / 월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장애통합시설 전담인력
 - 장애통합시설 전담인력의 경우, 종사자와 동등한 자격기준 및 근로조건 충족시 지급
 - 운영비 미지원 시설(설치 후 24개월 미경과) 포함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지역아동센터	10만원 / 월	15만원 / 월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원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 종사자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10만원 / 월	15만원 / 월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대상 : 가정위탁지원센터 근무 종사자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가정위탁지원센터	10만원 / 월	15만원 / 월

9] 다문화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종사자
 - 센터 운영인력, 사례 관리자, 이중언어 코치, 언어발달 지도사, 통·번역 지도사 등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만원 / 월	10만원 / 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지원대상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15만원 / 월	20만원 / 월

10] 한센주거복지시설

- 지원대상 : 한센주거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 지 급 액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한센주거복지시설	15만원 / 월	20만원 / 월

제3장 보수교육비

I 사업개요

1 목 적

-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도모

2 목표 및 영역

○ 교육목표

-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향상 및 인권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가치관 재정립
- 최신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 방법, 기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적응력 증진
- 통합적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 교육영역

- 사회복지학 교육영역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특별 분야로 나뉠 수 있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과 과목 >

- 기초(Basic) 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Social Work Ethics & Values), 사회복지 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 실천(Practice) 영역 : 사회복지시설천(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 인권(Social Work Human Rights)
- 정책과 제도(Policy)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Issues and Law of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특별 분야(Special Field) : 특별 분야(Special Field)

③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별표4(과태료 부과)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

④ 교육 운영의 위탁

○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 위탁기관 주요업무

- 보수교육 과목, 대상기관 및 대상자 관리
-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심사 및 승인, 모니터링 및 평가)
※ '18년 경기도 보수교육 실시기관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보수교육 운영 관리(연간·분기별 교육 계획서 심사, 결과보고 심사 및 승인)
- 보수교육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
- 그 밖에 기타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1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경기도 보수교육 실시기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시설³⁾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⁴⁾ 포함
단, 단기근로자⁵⁾는 제외함

※ 비정규직, 단위사업·특화사업 종사자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1호 각목의 법률 또는 사업 지침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명기되어 있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⁶⁾에서 정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포함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 퇴사 후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 2018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개인운영시설 포함)

4)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단기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 아래 표의 의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	시설종류	직종 및 직급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 관장, 사무분야의 책임자,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 -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결핵·한센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센터장, 1~5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 2017 자활사업안내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합아동복지시설)	- 시설장, 기관장, 센터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아동복지법제52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별표12], 시행령제43조[별표7], 시행령제48조[별표10]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시설장, 기관장, 사무국장,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부장, 과장 등), 취업지원 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 통합 센터장,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노인복지법제23조의2, 제31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4[별표 1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 시행규칙제17조제1항[별표2], 시행규칙제22조제1항[별표4], 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표7], 시행규칙제29조제1항[별표9] -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201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 - 2017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쉼터)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련법	시설종류	직종 및 직급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관장, 사무국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선임직업훈련교사(선임직업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교사),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사회재활직, 복지지원직, 1급~4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별표4], 시행규칙제42조[별표5]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7조[별표 1] -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2항[별표4]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원장, 시설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영유아보육법제1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별표1]

관련법	시설종류	직종 및 직급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시설장,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직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2]
	○ 자활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요양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재활활동요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7조 - 정신보건법제16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조[별표 2]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별표5]
	○ 정신재활시설 (구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구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구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구 중독자재활시설, 구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구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상담소	- 시설장, 소장, 센터장, 총괄팀장,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제18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별표1]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긴급전화센터	- 소장, 센터장, 시설장,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제5조, 제7조, 제7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별표 3]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관련법	시설종류	직종 및 직급	근거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시설장, 기관장, 사무국장,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부장, 과장 등), 취업지원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 통합 센터장,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소장, 전담인력, 팀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형, 확대형)	- 센터장, 팀장, 팀원, 상담전문인력,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 2017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201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 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 상담소)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보호센터)	- 시설장, 상담요원, 행정책임자,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조, 제19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 1]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 단,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 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장,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관리업무책임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1항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별표1]

※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의 교육대상자

② 교육비 지원 제외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 교육지원 대상자 중 교육 신청 후 참석하지 않고 3일 전까지 취소 및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 교육비 지원 불가
 -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가족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교육전일 취소도 인정
- 경기도 이외 타 지역 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이외 기관·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 ※ 교육비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보조금)으로 보수교육비 지원 불가

③ 교육 면제자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면제자 범위
 -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⁷⁾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면제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7)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4] 과태료 부과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 불이익한 처분 : 해당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 과태료 부과대상(아래 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총 이수평점 8평점 미만
 - 총 이수평점 중 집합교육 4평점 미만
 - 필수영역(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중 1평점 이상 미이수

< 과태료 부과 제외자 >

- 면제로 승인된 자
- 교육 당해 연도에 총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 총 이수평점 중 집합교육 4평점 미만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추가 평점 승인 요청서(서식8)를 제출한 후 승인 받은 경우

5] 교육 실시기관

○ 교육 실시기관 범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최근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의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 2018년 경기도 보수교육 실시기관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경기도 내 교육 실시기관(2개소)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지원 대상임.

6] 교육신청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기관아이디로 접속하여 등록
- 등록된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신의 직급이나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교육 신청
- 교육신청기간 : 매년 2분기 ~ 12월 첫째주
※ 회계연도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12월 둘째주에 교육 완료

7] 기타사항

- 기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준함

III

운영절차

1]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교육 지침 마련, 교육 홍보, 교육 예산 지원(도비)
- 시·군 :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보수교육비 지급, 교육 예산 지원(시군비)
- 교육기관 : 연간교육계획 수립·제출(→경기도, 2월), 교육 실시, 교육비 청구(→시·군), 교육이수자 현황 관리 및 실적보고(→도)

2] 세부 내용

절 차	세 부 내 용
보수교육 지침 마련	- 도 → 각 시·군 및 교육기관 (매년 12월중)
↓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 교육기관 → 도 (매년 2월중) * [서식1]
↓	
지원 대상자 명단 작성	- 각 시·군 → 도 → 교육기관 (매년 2월중) * [서식2]
↓	
보수교육대상자 교육 신청	- 개인별 보수교육대상자 교육신청 (매년 2~4분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지원센터)
↓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진행	- 교육 실시기관별 교육 진행 (매년 2~4분기)
↓	
보수교육비 청구	-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 한해 보수교육비 청구 (교육기관 → 해당 시·군 / 7월 첫째주, 10월 첫째주, 10~12월 교육비는 12월 셋째주 내 신청) - 필요서류 : ① 공문 ② 교육 이수증(해당 교육기관) ③ 교육이수자 명단 등 * [서식3]
↓	
보수교육비 지급	- 각 시·군 → 교육기관 (7일 이내 교육비 지급)
↓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 교육기관 → 도 7월, 10월, 12월 * [서식4]

교육기관명

수신자 경기도 복지정책과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교육과목
	인원	일자	시간	장소	

붙임 세부계획서 1부. 끝.

교육기관명**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시] ○○○○년 보수교육 사업(실행)계획서

사업명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교육인원 :
- 교육장소 :

추진내용 및 방법

-
-
-

기대효과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2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 명단 (시군 → 도 → 교육기관)

시군명	시설종류 (세부)	세부유형	시설정보		교육대상자			비고
			시설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예)								
수원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복지관			82.06.28		

※ 시설구분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상담소 아동친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다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 시설 중 생활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상담소 노숙인치료시설 폭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17.2.4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교육기관명

수신자 00시장·군수

제 목 **년도 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교육 실시 후 보수교육비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천원)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보수교육 기간	보수교육비 대상자수	교부신청액	비고

-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교육 이수증 1부.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계좌입금 청구서.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교육기관명

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5.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내역 (예시)

○ 총사업비 : 4,800천원 (금회청구액 1,8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명	교육기간	보수교육비 지원인원	청구액 (지원금액)
계				
1차				
2차				

○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시군명	분야	시설 종류	시설명	시 설 담당자	연락처	교육 대상자	생년월일	비고
예)								
수원시	노인		** 복지관				82.06.28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명 :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 직책

성명

(서명)

서식4**보수교육 실적 보고 (교육기관 → 도)****교육기관명**

수신자 경기도지사

제 목 년도 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교육일자	교육장소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비 신청자 수	비고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1.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2. 변경사유				

붙임 세부실적 보고서 1부. 끝.

교육기관명**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보수교육비 지원 세부실적 보고서

(단위 : 명/천원)

시군명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청구금액	비고
		계	2분기	3분기	4분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합 계								

제4장 상해보험비

I 사업개요

①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

②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12.5.11.제정)

③ 지원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제도를 통하여 지원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직원 1인당 年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제보험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경기도(5천원) + 시군(5천원)

※ 1인당 年 2만원의 보험료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본인부담금 50%(10천원) 지원

4] 특징 및 장점

- 유사보장 시중보험 대비 최대 80% 내외 저렴한 공제료
 - ※ 연령 / 성별 / 직종과 상관없이 공제료 동일
- 1년 365일 24시간 보장(업무 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보장)
- 1년 단위 갱신(소멸)형 상품으로 장기 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음
- 계약직 종사자도 가입 가능
- 한방 및 치과 상해입원(비급여) 의료비 보장
 - ※ 치료목적 외 비용과 일부 항목은 제외

1] 가입대상

○ 공통요건

-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자
- 만 15세 이상인 자
- 사무직(상해급수 1급 해당자 -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 만 80세 이하
- 기능직(상해급수 2급 해당자 - 차량기사, 조리사 등) : 만 70세 이하

○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 포함
- 단기간근로자는 제외

2] 제외대상

○ 사회복지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 ※ 가입해도 보상 불가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인력(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등)

○ 가입대상시설 이용자(수혜자)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자

○ 보육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인력, 보육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자부담으로 가입 가능

3] 신청기간 및 보장기간

○ 청약(신청) 기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보장 기간 : 매년 4월 1일 ~ 1년간

4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서 작성하여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팩스 송부
 - ※ 신규시설만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갱신시설의 경우 청약서만 제출
 -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화) 02-3775-8899, (팩스) 02-6969-9606

5 보장사항

- 공통사항 :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플랜 A, B형 모두 동일하게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
- (플랜 A형) 상해사고로 입원하거나, 골절/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 성격의 일당비 또는 진단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플랜으로,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
- (플랜 B형) 상해사고에 의한 실손의료비(입원/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하는 플랜으로 임직원 중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공제회와 해당 보험사가 발생한 의료비를 비례보상
 - ※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비용을 공제회와 보험사가 나누어 지급하여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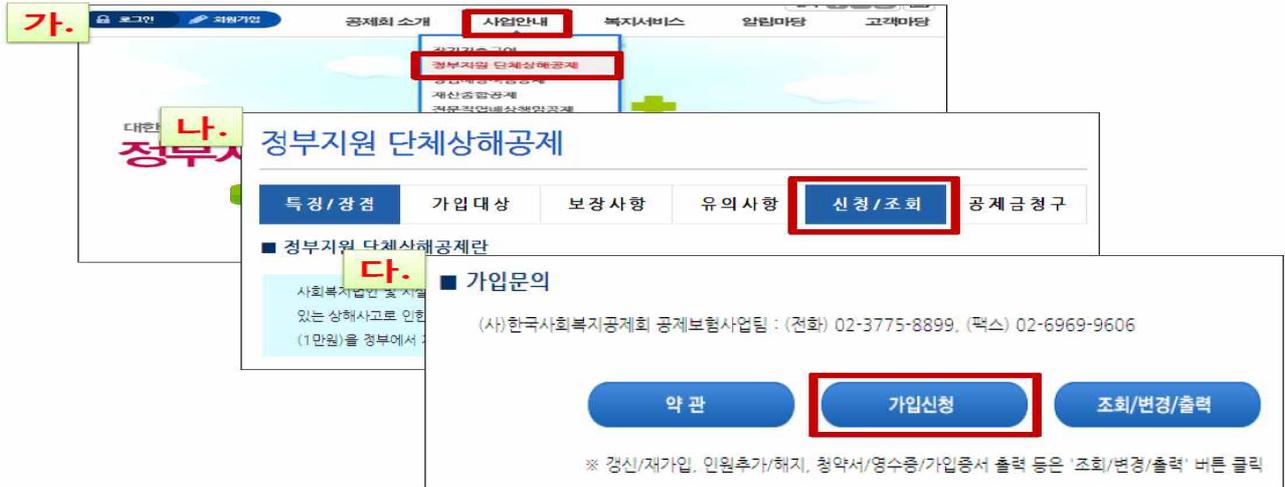
< A형, B형 보장내용 및 금액 >

구분	보장내용 및 금액		비고
공통	상해 사망	3,000만원 (정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장해율	
선택	상해 입원일당비	일당 2만원 (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중복보상
	A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입원의료비	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비례보상
	B 상해 통원의료비	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상해 처방조제비	처방 건당 5만원 한도 (180건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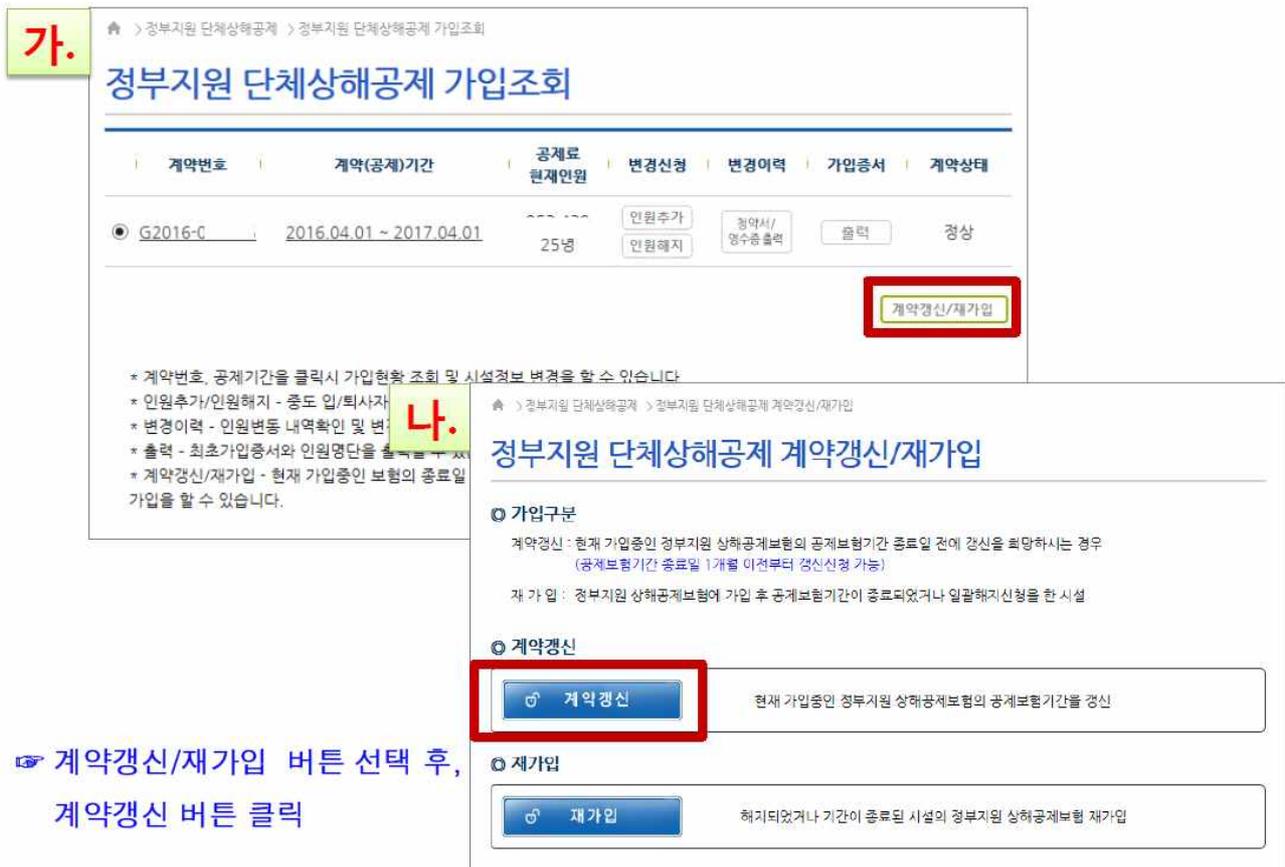
* 직원별 A / B 플랜 선택 가입

⑥ 신규가입 및 기존가입 갱신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 가입신청



○ 로그인하고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조회 후 계약갱신



☞ 계약갱신/재가입 버튼 선택 후,
계약갱신 버튼 클릭

7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금 청구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III 운영절차

1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지침 마련, 홍보, 보험비 예산 지원(도비)
- 시·군 : 대상자 선정, 상해보험비 지급, 보험비 예산 지원(시군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보험가입, 보험료 청구 및 보험 가입자 현황관리

2 세부 내용

절 차	세 부 내 용
상해보험 지침 마련	- 도 → 각 시·군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2월중)
↓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 명부 작성	- 각 시·군 → 도 (1~2월중) - 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월중) * [서식5]
↓	
상해보험 지원 계획서 제출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도 (2월중) - 필요서류 : ① 공문 ② 계획서 * [서식6]
↓	
상해보험대상자 가입 신청	- 시설별 상해보험가입 신청 (3.1~3.15)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온라인 신청
↓	
상해보험가입 결과 보고 상해보험비 청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해당 시·군 (4월중) - 필요서류 : ① 공문 ② 교부신청서 ③ 가입자 명단 및 보험증서 * [서식7]
↓	
상해보험비 지급	- 각 시·군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즉시)
↓	
분기별 통계 보고서 제출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도 (분기별) * [서식8]

서식5

지원 대상자 명부 (시군 → 도 → 공제회)

시군명	시설종류 (세부)	세부유형	시설정보		교육대상자			비고
			시설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예)								
수원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복지관			82.06.28		

※ 시설구분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상담소 아동전문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이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 시설 중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상담소 노숙인치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17.2.4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수신자 경기도지사

제 목 **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지원 계획**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0000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 명/천원)

가입자 예상자수	신청금액	비고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시] ○○○○년 상해보험비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 사업근거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 사업목적
 -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4.1.~2019.4.1
 - 사 업 량 : ※ 사업대상(수혜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
 -
 -
- 기대효과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수신자 00시장·군수

제 목 **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청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천원)

시군명	대상자수	가입자수	청구금액	비고

-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가입자 명단 및 가입자 보험증서 각 1부.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계좌입금 청구서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명 :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 직책

성명

(서명)

계좌입금 청구서

- 사업명 :
- 청구액 : 금 원(원정)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상기 금액을 (**보 조 사 업 명**)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 별첨 : 교부받을 보조금 전용 계좌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 ○ ○ (단체명) (인)

대 표 자 : ○ ○ ○ (인)

○○○ 시 장 귀하

서식8

상해보험 통계 현황 (공제회 → 도)

□ 2018년도 00분기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대상인원	유지인원	당해연도		누적건수	누적보상액
			보상건수	보상금액		
계						
경기도						
수원시	예) 800	800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